

職務分析을 통한 委託營農會社 從事者の 教育프로그램 開發에 관한 研究

이무근*, 정철영*, 최상호**, 이영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과, **농협전문대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 Study on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Employees of Committed Farming Company by Job Analysis

Lee Mu-Keun*, Jyung Chyul-young*, Choi Sang-Ho**, Lee Young-Da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gricultural Cooperative Junior Colleg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committed farming company(CFC),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that were suited for their needs and field work for employees of CFC by job analysis.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survey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sent to 186 representative directors of CFC and among them 6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that (1) main purpose of CFC establishment was to provide farmhouse with farm labor, (2) main activity of the CFC was to manage paddy-rice plant on commission and to process agricultural products, (3) future plan of the CFC was to increase number of committed farming, and to plan marketing for agricultural products.

Main problems of the CFC were lack of tools and equipment for repairing agricultural machinery; few experts who can repair agricultural machinery; no practical knowledge on finance, accounts, and tax; weak organization and no job specification of CFC; poor working environment; difficulty to manage workers because of irregular projects and leisure season for farmers; lack of qualified workers and assistants.

To implement education that were suited for their needs and field work for employees of CFC, educational contents that employees of CFC cultivate field work ability and CFC manage effective should be select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직면

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UR)로 인한 정부의 개방농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농산물의 수입도 대부분 개방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 시장 경제의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보호 중심 농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내적으로는 농정의 기조가 구조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할 만큼 농정의 전환

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구조면에서 영세분산적 소농구조-호당 평균 1.2ha, 소유필지 4-5필지로 분산(설광언, 1991)-를 가진 미작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서 전문화,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농촌노동력의 수급여건 악화로 인한 농촌노동의 상승과 농촌 인구의 탈농화 현상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부녀화등으로 농업노동력은 양적·질적 하향추세가 지속되어 기계화 없이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시에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전문 영농인력 육성대상 계층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농업취업자 구성에 있어서 전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40세 이상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유동성이 높은 20대의 후계인력은 10%에 불과한 실정(설광언, 1991)이라 경지면적 확대를 통한 농업의 기계화 추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의 기계화와 상업농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신장시키고, 농업노동력의 부녀화·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는 과감한 임대차와 수·위탁 영농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일 것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노동력이 절대부족한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도 농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농기계구입에 따른 고정비용 부담경감과 과투자를 방지하며, 위탁영농회사가 임작업료를 저렴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영농비를 경감시키며, 농기계 이용규모의 확대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상업농 시대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영농방식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89년 5월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위탁영농회사를 영농대행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설립구상을 제시하였고,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1994년까지 군단위별로 1개소씩을 설립·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탁영농회사는 설립 초기단계이고, 위탁영농 사업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분업화되지 않

은 상황이며, 행·재정 및 시설과 장비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위탁영농업의 현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기회가 미흡하고, 종사자들의 직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직무를 파악하여 전문인력양성과 위탁영농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직무를 구명하므로써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요구와 현장직무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 2)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수행시 문제점을 구명한다.
- 3)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를 위한 교육 실태를 파악한다.
- 4)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를 구명한다.
- 5) 연구결과 1), 2), 3), 4)에 의하여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委託營農

농지 소유자가 경작자에게 영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 그 댓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영농방식

나. 委託營農會社

농업노동력의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株式, 有限, 合名, 合資 형태의 영농대행조직

다. 職務遂行能力

위탁영농회사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종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정서적, 심체조작적 인 기초능력과 전공분야에 대한 기술 및 기능 능력

라. 教育프로그램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내용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분석을 기초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분석은 직무내용만을 파악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내용만을 개발하였다.

5. 연구의 방법

가. 文獻研究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현황과 현장직무수행시 애로사항 등에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 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현재 설립·운영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정관 및 설립 결과 보고서 및 관련 문헌을 수집·고찰하였다.

나. 調査研究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 파악과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 분석, 현장직무수행시 문제점,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위탁영농회사 186개소의 대표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완성된 질문지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총 186매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67매(36.0%)를 우편으로 회송받아 전량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농림수산부(1992.6)의 위탁영농설립현황에 제시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며, 현재 설립등기만 하고 설립·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는 Personal Computer의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주로 빈도, 백분비, 평균, 표준편차 등이었다.

II. 본 론

1.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현황

가. 委託營農會社의 委託營農事業 現況과 展望

주로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 및 농업구조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②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와 수리, ③ 소규모 관개시설의 위탁 관리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농산물의 위탁생산 및 판매, 농산물의 위탁가공 및 판매, 농지의 임대대선, 소규모 경지정리 및 객토 사업, 농토배양 대행, 농작물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의 사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농림수산부, 1992; '91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 보고서).

위탁영농사업 현황을 보면 농작업 대행(97%)과 위탁 농업경영(7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수행할 위탁영농사업은 농작업대행(99%)과 위탁농업경영(90%)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위탁생산·가공·판매(76%), 경지정리 및 객토(75%), 농기계·장비의 임대 및 수리(75%), 농작물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73%)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표 1〉 참조).

나. 委託營農會社의 農作業委託 現況과 展望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경기일보, 1992.6.24; 농협중앙회, 1992) 위탁영농회사는 대부분 수도작에 대한 완전위탁, 또는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등에 대한 부분위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와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일보, 1992. 6. 24; 농림수산부, 1990, 1992; 농촌진흥청, 1992; 농협중앙회, 1991; 한국농어민신문, 1991. 5. 22).

1) 水稻作의 農作業委託 現況

위탁영농회사의 수도작에 대한 농작업 위탁규모는 육묘, 경운, 정지, 방제, 수확 등의 작업별 영역에 있어서 방제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50ha 이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농협중앙회, 1991), 작업량의 폭주로 인하여 농작업위탁 전량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많

〈표 1〉 委託營農會社의 委託營農事業 現況과 展望

위탁영농사업 수행유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수행할 사업					
	수행함		수행안함		계		수행함		수행안함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위탁영농사업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위탁농업경영	52	77.6	15	22.4	67	100.0	60	89.6	7	10.4	67	100.0
○ 농작업 대행	65	97.0	2	3.0	67	100.0	66	98.5	1	10.5	67	100.0
○ 관개시설 위탁관리	10	14.9	57	85.1	67	100.0	43	64.2	24	35.8	67	100.0
○ 농기계·장비의 임대 및 수리	12	17.9	55	82.1	67	100.0	50	74.6	17	25.4	67	100.0
○ 농산물 위탁생산 가공, 판매	6	9.0	61	91.0	67	100.0	51	76.1	16	23.9	67	100.0
○ 농지의 임대알선	11	16.4	56	83.6	67	100.0	45	67.2	22	32.8	67	100.0
○ 경지정리, 객토	10	14.9	57	85.1	67	100.0	50	74.6	17	25.4	67	100.0
○ 농토배양 대행	7	10.4	60	89.6	67	100.0	36	53.7	31	46.3	67	100.0
○ 농작물의 집단재배, 공동작업	21	31.3	46	68.7	67	100.0	49	73.1	18	26.9	67	100.0

았다(한국농어민신문, 1991년 5월 22일, 농협중앙회, 1991). 이는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마저 농업노동력의 확보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수도작의 농작업위탁 규모는 완전위탁, 부분위탁중 건조, 경영위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水稻作 以外の 農作業委託 現況과 展望

위탁영농회사는 수도작 중심의 농작업 위탁에서 과수,

화훼, 특작 및 축산 등의 분야로 위탁영농의 범위 확대(농림수산부, 1992), 위탁영농 이외에 농산물 판매나 농산물 가공(농협중앙회, 1992), 특히 농한기를 이용한 상토 및 퇴비제조, 육묘, 버섯, 채소, 화훼 등의 시설 재배, 조사료 재배,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농산물 직판장, 미곡 종합처리장 및 청결미 도정공장 등의 농산물 가공, 농기계수리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모색중에 있다(농림수산부, 1992).

〈표 2〉 代表理事가 應答한 水稻作 以外の 農作業委託 分野에 대한 現況 및 展望과 重要性*

현황, 전망, 중요성	현 재				미 래			
	수행 회사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수행할 회사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농작업위탁 분야								
○ 과수분야 위탁영농	37	55.2	1.19	0.46	56	83.6	1.50	0.79
○ 채소분야 위탁영농	35	52.2	1.26	0.56	57	85.1	1.54	0.76
○ 축산분야 위탁영농	36	53.7	1.42	0.73	61	91.0	1.62	0.84
○ 시설원예분야 위탁영농	37	55.2	1.38	0.76	58	86.6	1.64	0.85
○ 농산물 유통	40	59.7	1.60	0.84	57	85.1	2.14	0.91
○ 농산물 판매	44	65.6	1.75	0.89	58	86.6	2.26	0.91
○ 농산물 가공	42	62.7	1.62	0.85	58	86.6	2.21	0.91
○ 농기계 수리	46	68.7	1.93	0.98	60	89.6	2.27	0.84
○ 농지 임대	48	71.6	2.04	0.90	53	79.1	2.17	0.89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주) 백분비 = 현재 농작업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수 ÷ 응답회사수 × 100,

앞으로 농작업위탁을 수행할 회사수 ÷ 응답회사수 × 100

이들 분야에 대하여 위탁영농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반이상의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농지 임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보통 이하였다(〈표 2〉 참조).

앞으로 수행할 수도작 이외의 농작업위탁 분야는 축산 분야의 위탁영농(91%)이 가장 높았고, 농지임대(79%)를 제외한 기타 분야들은 80% 이상의 회사가 수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시설원예분야 위탁영농(1.64), 축산분야 위탁영농(1.62), 채소분야 위탁영농(1.54), 과수분야 위탁영농(1.50)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보통 이상이였다(〈표 2〉 참조).

2.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수행시 문제점

가. 現場職務遂行時 問題點

1) 業務遂行 人員 程度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업무수행 인원이 부족(75%)하였지만, 대표이사들은 회사의 실제 운영기간이 4개

월~5개월(농번기) 정도로 짧아 사원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보조인력이 부족하지만,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농한기에는 고용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資格證 所持 現況

농업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는 13%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농업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농업관련 자격증의 종류도 85%가 농기계관련 자격증이였다.

3) 現場職務遂行時 隘路事項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현장직무 수행시 수행할 농작업에 대한 지식부족을 제외한 영역에서 대부분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작업장 조건-작업장의 분산(4.37)과 농로 및 경지 정리의 불량(4.22)-과 인력부족-농작업보조 인력의 부족(4.36)-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표 3〉 참조).

〈표 3〉 代表理事가 應答한 現場職務 遂行時 隘路事項*

애로사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 작업장의 분산	67	4.37	0.92
○ 농로, 경지정리 불량	67	4.22	0.90
○ 농기계 사용능력 부족	67	3.30	1.07
○ 수행할 농작업에 대한 지식 부족	67	2.82	1.04
○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	67	4.36	0.87
○ 농작업의 합리적인 업무분담 부족	67	3.43	0.96
○ 작업량의 과다	67	3.48	1.08
○ 농기계수리, 관리인력 부족	65	3.72	1.10
○ 농기계수리 공구, 부품 부족	66	4.09	1.00

* 1: 어려움이 전혀 없음, 2: 어려움이 거의 없음, 3: 보통, 4: 어려움이 약간 있음, 5: 어려움이 매우 많음

나. 運營, 經營上의 問題點

1) 構成員의 會社參與 形態

상당수의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이 원래 각자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으면서 농번기에만 회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소속감 결여로 회사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어 다른 직업이 없고 오직 회사에만 참여하고 있

는 종사자들과 갈등이 있었다.

2) 會社運營 期間

1년중 위탁영농회사의 실제 운영 기간은 3개월 이하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개월~6개월(33%), 7개월~9개월(16%), 10개월 이상(11%) 순이었다. 따라서 73%의 위탁영농회사들이 1년중 6개월이하만 운영

하고 있었다.

3) 會社 非運營時 構成員들이 從事하고 있는 分野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때, 종사자들은 대부분 각자 자기 고유의 직업에 종사(55%)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하는일이 없는 종사자는 36%였다. 나머지 9%의 종사자는 회사의 위탁농작업 수행, 위탁농가관리 및 회사 홍보, 농작업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잡역을 하고 있는 종사자도 있었다.

4) 運營 및 經營上的 隘路事項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회사의 운영 및 경영시 모든 영역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농한기 시 노동력 활용 문제(4.33), 농업경영비(4.28)와 농기계 장비 구입비(4.22) 등의 운영자금 부족, 회계분야의 인력 부족(3.90)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표 4〉 참조).

〈표 4〉 代表理事가 應答한 會社 運營 및 經營上的 隘路事項*

에 로 사 항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 농업경영비 부족	67	4.28	0.83
○ 농기계장비 구입비 부족	67	4.22	0.93
○ 작업료 체납	67	3.84	0.95
○ 농작물 완전위탁시 재해발생	67	3.82	1.09
○ 농한기 노동력 활용 문제	67	4.33	0.96
○ 행정 사무인력 부족	67	3.70	0.92
○ 회계처리 인력 부족	67	3.90	0.94
○ 기존 영농단과의 마찰	67	3.31	1.18
○ 농협과의 협조체제	67	3.43	1.06

* 1: 어려움이 전혀 없음, 2: 어려움이 거의 없음, 3: 보통,
4: 어려움이 약간 있음, 5: 어려움이 매우 많음

다. 會社 運營上 必要한 人力 分野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인력 분야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필요하였으며, 특히 전문 농업기계

수리 분야(3.88), 농작업보조 현장직무 분야(3.84), 전문 농업기술 개발 분야(3.81), 농작업전문 현장직무 분야(3.70)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였다(〈표 5〉 참조).

〈표 5〉 代表理事가 應答한 會社의 人力 必要 程度*

인 력 분 야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 전문 현장직무(농작업) 분야	67	3.70	1.17
○ 보조 현장직무(농작업) 분야	67	3.84	1.08
○ 전문 농업경영 분야	67	3.52	0.99
○ 사무 분야	67	3.42	0.94
○ 세무 및 회계 분야	67	3.63	1.07
○ 판매 및 유통 분야	67	3.45	1.06
○ 전문 농업기술개발 분야	67	3.81	0.97
○ 전문 농업기계수리 분야	67	3.88	1.01

* 1: 매우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3.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교육 현황

가. 教育 및 專門訓練履修 現況

(표 6)과 같다.

대표이사들의 교육 및 전문 훈련 이수 현황을 보면

(표 6) 教育 및 專門訓練 履修現況

교육 및 전문훈련 이수현황			빈도	백분비
교육이수 현황	이수경험	있음	57	85.1
		없음	10	14.9
		계	67	100.0
	이수기관	농촌진흥청	49	70.0
		농림수산부	11	15.7
		농협중앙회	8	11.4
		기타*	2	2.9
		계	70	100.0
	이수기간	5일 미만	16	28.1
		5일 이상~10일 미만	20	35.1
		10일 이상~15일 미만	11	19.3
		15일 이상	10	17.5
		계	57	100.0
	이수내용의 의의움 정도	거의 무용	2	3.5
		무용	1	1.8
보통		22	38.6	
유용		22	38.6	
매우 유용		10	17.5	
계		57	100.0	
전문훈련이수현황	이수경험	있음	196	54.9
		없음	161	45.1
		계	357	100.0
	훈련이수기간	5일 이하	35	19.4
		6일 이상~10일 이하	56	30.9
		11일 이상~15일 이하	38	21.0
		16일 이상~20일 이하	12	6.6
		21일 이상~25일 이하	12	6.6
		26일 이상~30일 이하	12	6.6
		31일 이상	16	8.9
		계	181	100.0

* 기타 이수기관은 가나안 농군학교와 대동공업연수원임

(주) 이수기관의 빈도수는 3개 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에서 이수한 숫자를 해당 항목에 포함시킨 숫자임.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촌진흥청+농림수산부+농협중앙회에서 이수=2명
- ② 농촌진흥청+농림수산부에서 이수=5명
- ③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에서 이수=4명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사자들의 교육이수 경험은 85%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교육이수 기간은 농촌진흥청(70%)이, 교육이수 기간은 10일 미만(63%)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교육이수 내용의 도움 정도는 대표이사들의 56%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도움을 받지 못한 대표이사들은 4%였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전문훈련이수 경험은 54.9%였고, 전문훈련이수 기간은 6일 이상~10일 이하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1일 이상~15일

이하(21%), 5일 이하(19%) 순이었다.

나. 教育時 強調되어야 할 教育內容

대표이사들은 교육시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의 분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농업기계관련 실기교육(4.01), 재무 및 세무, 회계관련(4.00),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위탁사업(3.99), 최첨단 농업기술(3.97), 전문 농업경영관리(3.94) 등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7〉 참조).

〈표 7〉 代表理事가 應答한 教育內容에 대한 要求*

교육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 농작물생력재배기술	67	3.58	1.09
○ 최첨단 농업기술	67	3.97	1.09
○ 농업기계관련 이론	67	3.58	1.17
○ 농업기계관련 실기	67	4.01	1.16
○ 전문 농업경영관리	67	3.94	1.09
○ 기업경영관리	67	3.76	1.14
○ 재무, 세무회계관리	67	4.00	1.06
○ 농산물 유통, 판매	67	3.76	1.21
○ 농산물 가공	67	3.72	1.13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위탁사업	67	3.99	1.05

* 1 : 전혀필요없음, 2 : 필요없음, 3 : 보통, 4 : 필요, 5 : 매우필요

4.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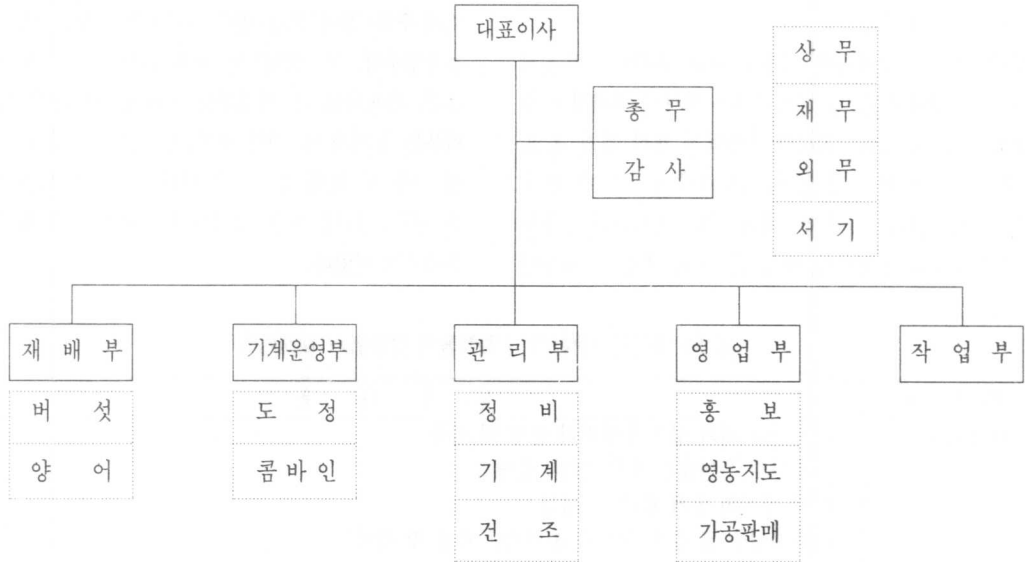
가. 委託營農會社의 組織現況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① 대표이사, ② 총무, 감사, ③ 재배부, 기계운영부, 관리부, 영업부, 작업부 등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밖에 위탁영농회사별로 상무, 재무, 외무, 서기, 버섯, 양어, 도정, 콤바인, 정비, 기계, 건조, 홍보, 영농지도, 가공판매 등의 부서를 두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남광위탁영농합명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를 두고 있지만, 대표이사 하부 조직으로 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운영부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 작업, 기계출납, 배차, 작업관리, 작업보고, 기계점검, 수리센

타, 건조장, 격납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총무부에서는 작업료 징수와 일반회계, 기계관리, 통계서무, 자재공급 등 회사의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위탁영농회사에 조직된 부서로는 대표이사가 95%로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고, 다음이 총무부(63%), 감사(48%), 기계운영부(42%), 영업부(24%), 작업부(24%), 관리부(19%), 이사(17%), 재배부(12%) 순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임시고용자를 두고 있는 회사는 29%였다. 또한 45개소의 위탁영농회사는 각 회사의 위탁영농사업중에서 중심이 되는 직무의 특성에 맞게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1) 委託營農會社의 組織



(그림 2) 남광委託營農合名會社의 組織

나. 委託營農會社 從事者의 職務內容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는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부서별로 업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이사과 총
무부에서 거의 모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농번기에는 모든 부서의 종사자가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표 9〉 참조).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를 주요 부서별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외업무 총괄관리 운영 및 감독, 회사의 운영방침 계획·결정·운영, 각 부서의 총책 관리 및 점검, 위탁계약 및 위탁자 관리, 사원 및 인력관리, 농작업 계획·분담·지도, ② 총무부는 제반 서류와 운영사항 관리 및 기록, 행정 및 사무업

무 총괄, 회계업무, 회사홍보 활동, ③ 기계운영부는 농기계 수리·정비·보관·연구·제작·구입·부품구입, 기종별 농작업수행, ④ 영업부는 농작업관측 사업, 농작업현황 점검, 판매사업, ⑤ 작업부는 계획된 농작업 수행, ⑥ 관리부는 농기계 및 시설 관리, ⑦ 감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 및 회계 감사, ⑧ 재배부는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신기술 이수, 농작물재배 관리 등의 직무내용을 수행하고 있었다.

〈표 9〉 委託營農會社의 主要部署別 從事者의 職務內容

부 서 명	직 무 내 용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내외 업무 총괄관리 운영 및 감독 ○ 회사의 운영방침 계획, 결정, 운영 ○ 각 부서의 총책 관리 및 점검 ○ 회계업무 및 감사(회사의 운영자금 대출 및 관리) ○ 농작업 계획, 분담, 지도, 수행 ○ 농민과의 유대강화, 회사 홍보 ○ 관공서관련 업무 ○ 위탁계약 및 위탁자관리(작업량 확보) ○ 사원 및 인력관리(인간관계 유지) ○ 각종 서류 작성 및 검토(출근명부, 영농일지 등) ○ 경영분석 지도 ○ 수도작 재배기술 교육 ○ 농기계 정비 ○ 사무실 관리 ○ 작물재배 ○ 가공 및 판매사업
총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운영의 전반적 관리 ○ 제반 서류와 운영사항 관리 및 기록(영업일지, 출납관리) ○ 회계업무(자금 관리, 작업수수료 수금) ○ 행정업무 총괄 ○ 대표이사 보조 ○ 사무업무 총괄 ○ 인력관리 ○ 위탁계약 ○ 회사홍보 활동(엽서보내기 등) ○ 농작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농작업 수행 ○ 사무실 운영 ○ 농업기자재 구매 ○ 농산물 판매 ○ 농토배양 ○ 운송

부 서 명	직 무 내 용
기계운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수리 및 정비 ○ 농기계 보관 ○ 농기계 연구 및 제작 ○ 농기계 구입 ○ 농기계 부품 구입 ○ 농작업 배정 ○ 농작업 수행전에 농기계 점검 ○ 기종별 농작업운영 총괄 지시 ○ 기종별 농작업수행
영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관측 사업 ○ 작업량 확보 ○ 농작업 계획 ○ 작업현황 점검 ○ 농작업 수행 ○ 판매직원과의 협의체제 구성 ○ 판매 사업 ○ 육묘장 관리 ○ 운송
작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농작업 수행 ○ 농기계 조작 ○ 농작업 지시 ○ 인부 및 농작업 관리 ○ 농기계 정비 ○ 육묘장 관리 ○ 영업시장 개척
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정비 및 관리 ○ 회사 창고 관리 ○ 농자재(육묘상자) 관리 ○ 농작업관리 ○ 회사 재산관리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 감사 ○ 회사의 자금출납 감사(회계 감사) ○ 자금 집행과정 확인 ○ 세무 감사 ○ 업무 감사 ○ 현장업무수행 향상을 위한 업무 배정 ○ 농작업 실시 ○ 농기계 정비 ○ 과일 판매
재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부장중심의 협의체제 구성 ○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 신기술 이수 ○ 육묘에서 수확까지의 농작업 책임 ○ 재배 관리 ○ 육묘, 채소 관리

5.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가. 從事者의 現場職務遂行能力 涵養을 위한 教育內容

1) 農機械關聯 教育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기종별 농작업 수행, 농기계 수리·정비·관리·보관, 농기계 연구 및 제작, 농기계 및 부품 구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장비의 임대 및 수리 사업(74.6%)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전문농기계수리 분야(3.88)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직무수행시 농기계 수리·관리인력이 부족(3.72)하고 농기계 사용능력이 부족(3.30)하며, 특히 농기계 수리공구·부품이 부족(4.09)한 실정이므로 농기계관련 이론(3.58)과 실기(4.01)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農業關聯 資格證 取得을 위한 教育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들이 농작업위탁이외의 다양한 위탁영농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분야에 대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중 극소수(13%)만이 농업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증도 대부분이 농기계관련 자격증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農業技術關聯 教育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수도작재배와 작물재배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앞으로 수행할 농작업위탁(98.5%) 사업을 과수(83.6%) 채소(85.1%)·축산(91.0%)·시설원예(86.6%) 등의 위탁영농 분야로 확대하고, 농작물의 집단재배(73.1%)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전문농업기술개발 분야(3.81)와 전문현장직무 분야(3.70) 및 보조현장직무 분야(3.84)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첨단 농업기술(3.97)과 농작물의 생력재배기술(3.58)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農業經營管理 教育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농작업계획의 수립·추진과 농업경영분석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위탁농업경영(89.6%)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전문농업경영 분야(3.52)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현장직무시 농작업의 합리적인 업무분담 부족(3.43)과 작업량의 과다(3.48)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농업경영관리(3.94)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會社의 效率인 運營을 위한 教育內容

1) 企業經營管理 教育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회사내의 업무의 관리·운영·감독, 회사운영 방침의 계획·결정·운영, 행정·회계·재무·시설관리, 인력관리, 위탁계약 및 위탁자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운영자금의 부족, 농작업수행 인력의 부족, 종사자들의 회사탈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한 기업경영관리(3.76)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財務·稅務·會計管理 教育과 行政業務의 簡素化를 위한 컴퓨터 教育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세무회계처리 인력의 부족(3.90)과 행정사무 인력의 부족(3.70)으로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세무·회계관리(4.00)에 대한 교육과 각종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委託營農事業과 農閑期 事業 教育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농한기의 노동력활용 문제(4.33)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작업위탁이외에 농산물 가공(86.6%)·유통(85.1%)·판매(86.6%)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통·판매(3.45)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유통·판매(3.72)에 대한 교육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위탁사업(3.99)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 연구는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위탁영농회사 종사자의 직무수행시 문제점 구명, 교육 현황 파악, 그리고 직무를 구명함으로써 위탁영농회사 종사자

들의 요구와 현장직무에 알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주로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현재 농작업 대행과 위탁농업경영 위주의 위탁영농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산물 위탁생산·가공·판매, 경지정리 및 재도, 농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분야로 위탁영농사업을 확대하여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가 수도작에 대한 농작업위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현재 중요성이 낮은 수도작 이외의 분야의 농작업위탁에 대하여 거의 모든 회사에서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은 현장 직무수행시 작업장 조건의 불량과 인력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부분이 농업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자격증의 종류도 대부분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어서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들은 회사의 운영 및 경영시 농한기때 노동력 활용 문제, 운영자금 부족, 회계분야의 인력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제로 농번기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탁영농회사들은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상 전문 농업기계수리, 농작업보조 현장직무, 전문 농업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셋째, 위탁영농회사 대표이사들의 대부분이 교육이수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이수 기관은 주로 농촌진흥청이었다. 교육이수 기간은 반 이상이 10일 미만이었으며, 교육이수 내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대표이사들은 교육시 농업기계관련 실기, 재무·세무·회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위탁사업, 최첨단 농업기술, 전문 농업경영관리 등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넷째,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는 대표이사, 총무부, 감사, 재배부, 기계운영부, 관리부, 영업부, 작업부 등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었지만,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직무는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부서별로 업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이사와 총무부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으며, 농번기에는 모든 부서의 종사자들이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요구와 현장직무에 알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영농회사 종사자들의 현장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1) 농기계관련 이론과 실기 교육, (2)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3) 최첨단 농업기술과 농작물의 생력재배기술 등의 농업기술관련교육, (4) 농업경영관리 교육 등의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은 (1) 기업경영관리 교육, (2) 재무·세무·회계관리 교육과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컴퓨터 교육, (3) 위탁영농사업과 농한기 사업 교육 등의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경기도(1991), '91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 요령, 기계 27125-7.
2. 김석원(1991), 농업위기 극복의 대안-위탁영농회사 각광-, 주간매경, 통권 611호.
3. 김성현 외 4인(1987), 농지관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47.
4. 김영재(1991), 기업영농실험대-올해 새 출발한 위탁 영농회사 예상 결산서, 주간매경, 통권 80호.
5. 김정호(1992), 농업구조의 전망과 정책과제 -농지·농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정호, 김홍배(1990),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2.
7. 김정호, 정명채(1991), 전업농과 농업인력 육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나래위탁영농합작회사(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보고.
9. 남광위탁영농합명회사(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보고.
10. 농경저널편집부(1992), 후세대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농경저널, 제1권 제3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출판부.

11. 농림수산부(1990), '91위탁영농회사 육성지원 실시 요령(안).
12. _____(1990), 영농조합법 인정관례.
13. _____(1990), 위탁영농회사 설립해설.
14. _____(1992), '92위탁영농회사경영교육교재.
15.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1990), 위탁영농회사 정관예(안).
16. _____(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농민에 대한 회사 경영교육 실시.
17. _____(1992), 위탁영농회사설립현황.
18. _____(1992), '91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결과 보고.
19. 농촌진흥청(1992), 위탁영농회사대표농민교육교재.
20. _____(1992), 위탁영농회사설립농민교육교재.
21. 농후위탁영농합명회사(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보고.
22. 농협중앙회(1991), 영농대행조직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조사연구보고서, 91-제2집.
23. 대풍위탁영농합명회사(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보고.
24. 박태권(1991), 농어촌발전 특별자치법 중 개정법 건안.
25. 보령영농합자회사(1991), '91위탁영농회사 사업계획서.
26. 비홍위탁영농합명회사(1991), 사업계획.
27. 삼화위탁영농합명회사(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보고.
28. 송대회, 김건수(1991), 농촌노동력부족과 위탁영농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9. 설광연(1991), 농업의 여건 전망과 농정의 기본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영덕군(1991), 영덕위탁영농주식회사 '91운영현황.
31. 영덕위탁영농주식회사(1991), 위탁영농회사 설립결과보고.
32. 웅천영농합자회사(1991), '91위탁영농회사 사업계획서.
33. 정영일(1984), 한국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34. 정주시(1991), 위탁영농회사 추진 상황.
35. 한국농촌문제연구소(1991), 미작의 기계화영농에 관한 세미나 자료.
36. 횡성위탁영농합자회사(1991), 정관.
37. 愛知縣農業綜合試驗場(昭和 56), 稲作受託經營の運營管理手法とその類型.
38. 田口俊郎, 折原俊二郎(昭和 56), 農業青年研修教育の課題と方向, 築波書房.